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9773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72,4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2000. 4.경 원금 8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회사의 대출 채무와, 2001. 6. 25.경 원금 8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회사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 D는 각 이 사건 회사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02. 11. 19.경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12. 9. 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2. 11. 1.경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3. 1. 24.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4,372,416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채무조정약정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위 14,372,416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변제한 구상금 14,372,4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하는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3인인 사실, 2013. 1. 24. 기준 이 사건 구상채무의 채무액이 원리금 합계 118,790,516원인 사실,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672, 2019하면672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9. 8. 12.경 이 사건 구상채무의 채무액이 원리금 합계 133,913,935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위 기준일 당시 원고의 부담부분은 39,596,838원($= 118,790,516\text{원} \div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무 가운데 14,372,416원을 대위변제할 무렵에는 채무액이 위 금액보다 조금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14,372,416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료, 정신적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청구원인 및 청구액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